

2025학년도 중간감사 보고서

[감사기간: 2025. 10. 14. ~ 11. 18.]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5. 12. 11.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목 차

■ 2025학년도 중간감사 보고서	1
--------------------------	---

■ 감사결과 지적 및 권고 사항

1. 조선대학교	3
2. 조선대학교병원	11
3. 조선대학교치과병원	17
4. 호남권역재활병원	21
5. 조선이공대학교	25
6. 조선간호대학교	32
7.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35
8.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37
9.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38

2025학년도 중간감사 보고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 사 회 귀 중

2025년 12월 11일

교육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및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29조에 따라,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학교법인조선대학교를 비롯하여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등 7개 설치학교와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3개 산하 병원을 대상으로 재산 및 회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다 음

1. 제 법령, 정관, 규정의 준수 여부
2. 법인 및 각 설치학교의 규정 정비 여부
3. 제 규정의 법령, 정관 및 타 규정과의 부합 여부
4. 편성된 예산의 실행가능성, 현실성 및 적정성 여부
5. 적절한 자산관리와 그 유지 여부
6. 법인과 설치학교간의 유기적 협조 여부
7. 법인 및 설치학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부
8. 각 기관장의 업무장악 및 효율적인 통제 여부
9.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의 유지 여부
10. 예산집행 시 법령 및 제 규정 준수 여부
11.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전용의 적절성 여부
12. 결산은 이사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여부
13. 각급 기관장 및 회계책임자의 변경 시에 인계·인수 적정성 여부
14. 기타 법인과 각 설치 학교 및 기관의 발전계획 검토 등

각급 기관의 회계는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승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본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각 기관의 제도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이나, 모든 취약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급 기관은 불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지적사항 외의 부분에도 내부 통제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제 규정을 보다 엄정하게 준수하여, 법인 및 산하기관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투명한 조직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정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이현필



2025학년도 중간감사 보고서

(2025. 12. 11.)

기관명: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김 정 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이 현 필 

연 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제 규정 재정비 요청 조선대학교는 학교 내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 규정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별로 규정 소관부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대학교 제 규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규정이 여전히 존치된 사례, ■ 소관부서 지정이 불명확하여 담당자가 규정 관리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시) ■ 「시설공사 적산 내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기준을 현행법(2천만 원 이상)과 달리 4천만 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퇴직공제부금비의 적용 기준도 현행 추정금액(1억 원 이상)이 아닌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세칙」 - 청렴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과 불일치 조선대학교는 정기적인 주기(예: 매년 또는 격년)로 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제 규정 정비 시 규정 소관부서와 담당직원이 소관규정을 확인하여 검토하도록 하여 부서별 직무별 소관, 담당하고 있는 규정의 숙지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수정, 삭제, 보완, 신설 및 폐지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현행 법령 및 대학의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2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종사자의 75% 미만 이수 등 이수 부진 시 과태료 납부, 부진 기관 지정 등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2022~2024) 조선대학교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3개년 평균 교직원 이수율은 75%(연도별 세부 이수율은 아래 표 참조)이고, 지난 3년간(2022~2024) 1,520명(중복포함)의 교직원이 해당 교육을 미이수하였습니다. 향후 소속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미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3	경비 및 미화용역 인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하려는 자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에 따라 기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선대학교는, 학생과의 접촉 가능성, 학생 주요시설 출입가능성, 용역제공 시간 및 정기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대학 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비 및 미화 용역 제공 인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2025년 현재 대학 내 근무하고 있는 경비 및 미화 용역 인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용역업체에서 신규인원 파견 시 성범죄경력 조회 및 관련 증빙이 수취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PC부품 등 교내 비품관리 철저  최근 그래픽카드 등 주요 PC부품 가격의 급등, 중고거래 플랫폼 확산에 따른 현금화 용이성 증가, 대학 PC실의 개방적 구조 및 보안 취약성 등으로 인해, 우리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에서 PC 및 부품 절도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교내 여러 단과대학 및 건물 내 PC실 컴퓨터 및 부품의 도난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교내 강의실 및 사무공간에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잠금 및 시건장치 등 PC 관련 비품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5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미수취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적격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총동아리연합회는 LTC 행사 관련 숙박 이용 시 실제 숙박 제공 사업자 명의를 아닌 대행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대행업체는 숙박사업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며, 실존 여부 및 실제 숙박업체와의 관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적격 증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박 예약을 대행한 업체가 숙박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숙박 예약서비스를 포함한 종합행사용역'으로 포괄적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는 객실 단가·숙박 일수 등 순수 숙박비 항목만 기재되어 있어 종합행사용역·예약대행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숙박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학생회 행사 집행 시 ① 실제 숙박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② 예약대행업체가 대납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 내역 및 거래명세서를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법상 비용 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6	무상취득 자산의 회계 미반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에 따르면, 대학은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당해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조선대학교는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았으나, 해당 추가 개발 용역을 사업 완료 시점까지 자산계정 및 잡 수입 계정에 회계 반영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운영계산서의 수익이 각각 445,500천원 과소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개발 용역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실제 대학에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재무제표에서 누락되어 재무상태 및 사업성고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 기준과 내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한 계약 체결 및 집행 과정에서도 내부 통제 미흡 및 회계 오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① 정보개발팀과 재무팀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추가 개발 용역을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② 사업 수행 부서와 재무팀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하는 상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7	하자검사 관리 미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1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1조(하자검사)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선대학교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32조의4(하자점검)에 따르면 감독부서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 지체없이 공사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공사 도급계약 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수취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이행증권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시설물 하자에 대비하고 있으나, 공사별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와 관련한 리스트가 누락되어 있거나,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하자보수관리부 비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만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는 차세대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 공사이력 기반 하자요청·점검 프로세스(연 2회 정기 점검 및 기간 만료 전 담당자 알림 등) 개발을 추가 요청, 구축하는 등 하자보수와 관련한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령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하자가 발견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증빙 보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등에 따라 적용범위가 정해지며,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증빙자료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근래 들어 산업안전관리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주요 기관 감사 시 다양한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일부 공사 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보호구 등에 물품 반입사진만 존재하고 실제 작업자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불출대장, 지급명부, 착용사진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명목의 비용 집행 시에도 대상자 명부, 진단명, 검진사유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사용이 인정되어 지출되는 등 증빙 서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자 확인 또는 보완서류 없이 비용 집행이 승인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일부 공사 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서류에는 안전 장비 및 보호구를 작업자들이 착용한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준공 서류에 첨부된 사진에서는 구입했다고 증빙한 사진상의 보호구를 작업자들이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음) 조선대학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확보하여 재해예방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 권고

연 번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9	우수 사례 - 가스냉방 설치 장려금 지원 조선대학교는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에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고 설치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장려금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2024학년도</td><td>2.5억 원</td><td>자연과학관</td></tr> <tr> <td>2025학년도</td><td>3.15억 원</td><td>공과대학 제2공학관 / 첨단캠퍼스</td></tr> </tbody> </table> * 신청기관 별 최대 2.5억 원 장려금 지급. 해당 사업은 연도별로 총 70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정한 지원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에 선착순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조선대학교는 관련 부서와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과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장려금 지원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이후에도 잔여 GHP 교체공사 추진 시 유사한 장려금 등 재정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례적 업무 수행 및 직무상 의무 외의 추가 행정을 통해 재정 확보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포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장려금액	비 고	2024학년도	2.5억 원	자연과학관	2025학년도	3.15억 원	공과대학 제2공학관 / 첨단캠퍼스	○ 포상(표창) 요청
구 분	장려금액	비 고									
2024학년도	2.5억 원	자연과학관									
2025학년도	3.15억 원	공과대학 제2공학관 / 첨단캠퍼스									